

일반사무위탁 변경계약서

㈜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와 신한아이타스㈜(이하 “수탁자”라 하고 “위탁자”와 합하여 “양 당사자”라 한다)는 양 당사자 사이에 2017년 9월 27일자로 체결된 일반사무위탁계약서(이하 “원 일반사무위탁계약”이라 한다)를 변경하기 위하여, 일반사무위탁 변경계약(이하 “본 변경계약”이라 한다)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 (정의)

“본 변경계약”에서 달리 정의되거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“본 변경계약”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“원 일반사무위탁계약”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제2조 (변경사항)

“양 당사자”는 “원 일반사무위탁계약”에 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변경 전	변경 후
제4조(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) “갑”은 “을”을 일반사무관리회사로 선임하고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. (이하 생략)	제4조(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) “위탁자”는 “수탁자”를 일반사무관리회사로 선임하고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. (이하 생략)
제8조(보수) (1)~(3) (생략) <신설>	제8조(보수) (1)~(3) (현행과 같음) (4) 위탁자가 출자한 자리츠의 수가 10개를 초과할 경우, 초과시마다 2항에서 정한 기본보수의 10%를 추가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되 추가 수수료의 상한은 위 2항에서 정한 보수의 20%로 한다. 추가 수수료는 위탁자의 자리츠에 대한 최초출자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.
<신설>	(5) 다만, 위탁자가 출자한 자리츠의 수가 줄어들어 위 4항의 추가 수수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하되, 위탁자가 출자한 자리츠로부터 출자금(혹은 잔여재산분배금)을 완납 받는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.
제14조(지시 및 통보 방식) (1)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 상대방 및 관련 수탁회사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하는 지시서 또는 통보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	제14조(요청 및 통보 방식) (1)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 상대방 및 관련 수탁회사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하는 <u>업무 요청서</u>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
제3조 (효력)

- ① “본 변경계약”에서 변경되지 않는 한 “원 일반사무위탁계약” 상의 모든 조항은 그 규정된 바대로 유효하며 그에 따라 해석되고, “본 변경계약”의 적용일은 2022년 12월 13일로 한다.

(이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위한 여백)

신한아이타스

“본 변경계약”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계약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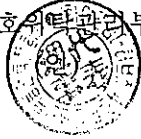
2022년 12월 13일

“위탁자”

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(여의도동)

회 사 명 : ㈜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대표자명 : 주택도시보증공사



“수탁자”

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층, 20층

회 사 명 :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

대표자명 : 정 지 호



신한아이타스